

# 소방청 일반직공무원(간호 7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소방청 일반직공무원(간호 7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9일  
소 방 청 장

## 1. 임용예정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임용예정시기	근무예정부서
일반직공무원 (간호 7급)	1명	2023년 9월 예정	소방청 119대응국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 2. 담당업무

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일반직공무원 (간호 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li><li>○ 감염병 환자 이송 대응체계 구축</li><li>○ 감염병 관련 복무관리 및 지침 마련</li></ul>

## 3.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요건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2)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3) 응시연령은 20세 이상인 사람(2003. 12. 31. 이전 출생자)
- 4)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5)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b>채용 분야</b>	<b>임용예정직급</b>	<b>선발예정인원</b>
일반직공무원	간호 7급(간호주사보)	1명
<b>임용예정기관명</b>		<b>근무예정부서</b>
소방청		119대응국 119구급과
<b>주요업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 수립 및 관리</li> <li>○ 감염병 환자 이송 자료 분석 및 대응체계 구축</li> <li>○ 감염병 관련 복무 관리 및 대응 지침</li> </ul>	
<b>필요역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공통 역량)</b>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 의식), 공동체 마인드(협업의식)</li> <li>○ <b>(직급별 역량)</b>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li> <li>○ <b>(직렬별 역량)</b> 전문성, 분석적사고, 문제해결능력, 상황대응력</li> </ul>	
<b>필요지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병, 각종 질병의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식</li> <li>○ 병원 전 응급의료단계에서의 감염병 환자 이송 체계 등에 관한 지식</li> <li>○ 감염병 관련 조사·시험·연구 등에 관한 경험과 지식</li> </ul>	
<b>응시자격요건</b>	<b>※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b>	
	<b>관련분야: 감염관리 관련 업무</b>	
<b>자격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호사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li> </ul>	
<b>우대요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간호사 자격증 중 감염관리전문간호사(보건복지부) 또는 감염관리 실무전문가(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자격 소지자</li> <li>○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의료기관(종합병원)**에서의 감염관리 관련분야의 근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li> <li>「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li> <li>「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li> </ul> </li> <li>**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 <b>종합병원</b></li> </ul>	

## 다. 응시자격요건 서류전형 기준

### <공통>

- ①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 및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②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함
- ③ 우대요건(근무경력 등)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은 **증빙자료 제출 건만 인정함**

###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의료기관(종합병원)에서 감염관리 관련분야의 근무경력** [최대 60개월, 근무기간별(월) 차등 우대]
  - ※ 간호사 자격(면허)증 취득 후 경력만 인정하며, 응시자격으로 활용한 경력은 제외
  - 1) **근무경력**에 대해서 평가(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①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담당업무 미기재, 채용 분야와 연관성이 불분명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담당업무를 기술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② 비정규직의 경우 관련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 ③ 경력증명서 제출 시 **대표자 직인 및 발급자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기재
  - ※ 각종 증명서류 미제출 시 관련 업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필수 제출
- ④ 증명서는 **최근 6월 이내**(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예외) **발행분**을 제출하고,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 ⑤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우대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 함

- 폐업회사의 경우 다음의 경력증명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제출 필수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3) 시간제 근무 또는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근무경력은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람만 인정

- ①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 자격 기준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 일부를 인정  
예) 계약직으로 3년간 전임 근무 : 3년 인정 /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②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중에서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② 감염관리전문간호사 자격증(보건복지부) 취득자 또는 감염관리실무전문가 자격증(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취득자

※ 복수의 자격 소지 시 1개만 인정

라. 경력증명서 제출 시 폐업자 업종 등의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동그라미)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동그라미)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민원증명**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증명발급을 신청하여 PC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민원증명 서비스**입니다.

- 현 서비스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2의 규정을 따릅니다.

**민원증명** 신청

- 국세증명신청
- 1. **· 사실증명신청**

**민원증명 원본확인 (수요처 조회)**

**문서위변조방지 및 처벌안내**

**민원증명 처리결과 조회**

**민원증명 이용시간**

·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등	연중무휴 24시간
·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연중무휴 08:00 ~ 22:00
· 사실증명발급신청	연중무휴 09:00 ~ 24:00

**민원증명 이용절차**

- 01 홈택스 로그인
- 02 민원증명 신청진행
- 03 민원증명 처리결과
- 04 발급완료 후 프린터 출력

**민원증명신청**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 휴업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 2. **· 소득금액증명**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증명
- 모범납세자증명
- 국세납세증명 조회(정부관리기관용)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 4. 시험방법

###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1) 응시자격요건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를 서류전형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2)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이하일 때에는 소극적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적극적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응시인원	서류전형 합격인원	비고
선발예정인원 4배수 이하	-	소극적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 5배수 이상	선발예정인원 5배수	적극적 서류전형

※ 합격선에 동점자 발생 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동점자 전원 서류심사 합격

###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1)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평정요소>

- |                   |                |
|-------------------|----------------|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면접 중 위원 회피(기피) 시에도 3명 이상 유지가 가능하도록 구성

- 2)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합격자 결정) ①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 '중', '하'의 개수)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 결정 ②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5. 시험일정

- 가.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나. 응시번호는 '23. 8. 21.(월) 10:00부터 119고시 마이페이지(원서제출내역)에서 확인

구분	시험일정	장소/방법
시험공고	2023. 7. 19.(수)	소방청, 119고시 누리집에 게시
응시원서 접수	2023. 7. 27.(목) ~ 7. 31.(월)	119고시(119gosi.kr)
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8. 23.(수)	소방청, 119고시 누리집에 게시
제2차 면접시험	2023. 8. 31.(목)	소방청, 119고시 누리집에 게시
최종합격자 발표	2023. 9. 8.(금)	소방청, 119고시 누리집에 게시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은 2023. 9. 18.까지 신청 가능

## 6.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23. 7. 27.(목)~7. 31.(월)

※ 문의전화: 044-205-7288(채용절차), 044-205-7290(응시자격, 서류안내)

나. 접수방법: **119고시**(119gosi.kr) 인터넷 접수만 가능(우편, 팩스, 전자우편은 불가능)

1)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주말·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접수 가능

2)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해야 함

※ 119고시 접속 시간과 관계없이 18시 이후부터는 접수 불가

※ 응시수수료 반환은 원서접수 마감일 24시까지 원서접수 취소를 완료해야 함

3) 원서접수 기간 내에 응시수수료를 결제(납부)하지 않으면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 포기 처리

4) 응시자는 원서접수 완료 후 정확한 접수가 되었는지 119고시에서 확인할 것(119고시 → 마이페이지 → 내접수내역)

5) 원서접수 이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 제출

※ 면접시험 시 신분증, 응시표, 관련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소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면접시험일에 제출

다. 응시수수료: 7천 원

저소득층 해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7. 유의사항

-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 직무분야 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나.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 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라.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마.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바.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사. 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시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 기한까지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응시포기로 간주합니다.
- 아.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서 포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기재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람이 최종합격자가 되는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 지정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합격 취소)
-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 8. 서류제출

- 증명서류는 서류전형 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 심사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 시 불합격 처리함
- 경력 관련 특이사항 있는 경우 전화상담(☎ 044-205-7290) 후 모든 서류구비 후 제출할 것을 권장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

구분	내용
1. 제출서류 목록표	○ 제출서류 해당란에 “☑” 표기
2. 자기소개서 1부	○ A4 2매 이내로 작성
3. 직무수행계획서 1부	○ A4 5매 이내로 작성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자필 기재 및 서명
5. 주민등록 초본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표기)
6. 자격증 사본 1부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제출
7. 자격요건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상근여부(상근·비상근·전일제·시간제·주당 근무시간 포함하여 표기), 채용 관련분야와 연관성 판단할 수 있도록 담당업무 상세 기재 ○ 발급담당자 성명·전화번호·이메일 등 연락처 기재(용도는 기관 제출용으로 기재(대표자 또는 회사 직인 포함) ※ 단 응시자 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력 등의 경우는 제외
8.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해당기간 출력·제출
9. 소득금액증명원 1부	○ 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해당기간 출력·제출
10. 근무경력 사실확인서 1부	○ 폐업에 따른 근무경력 입증(p.4 참고)

### 아래 사항은 해당자만 제출

우 대 요 건	11. 우대요건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의료기관(종합병원)에서의 관련분야 경력 소지자 ※ 우대요건 경력증명서는 “자격요건 경력증명서”에 준하여 담당업무 등 상세기재
	1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13. 소득금액증명원 1부	
	14. 자격증 사본 1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 감염관리전문간호사 자격증(보건복지부) 소지자 ○ 감염관리실무전문가 자격증(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소지자

## 9. 관련근거

-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 나. 「공무원임용령」 제2장 제2절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 다.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10. 임용예정일 및 보수

- 가. 임용 예정일: 2023. 9월 예정 ※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나.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 적용

구분	2023년도 월지급액 참고표 (단위: 원)	
	상한액	하한액
7급	4,115,000 (31호봉)	1,962,300 (1호봉)

## 11. 기타사항

- 가.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최종합격자 발표 후 10일 내)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됨
- 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마.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 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 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할 수 있습니다.

바. 발행기관의 증명이 있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제출서류 중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국가공무원법」 제64조(겸직금지의 의무)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임용일 이전에 반드시 근무기관에서 퇴직 또는 폐업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아.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름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채용절차: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044-205-7288~94)

2) 직무사항: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632)

※ 문의전화: 09:00~18:00, <토요일,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http://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응시분야	응시직급	성명	생년월일
일반직공무원	간호 7급		

연번		제출목록	제출 여부	
			제출	미제출
1	필수서류	■ 제출서류 목록표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2		■ 자기소개서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3		■ 직무수행계획서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4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5		■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 기재, 주민등록번호 전체표기)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6		■ 자격증 사본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7		■ 자격요건 경력(재직)증명서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8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9		■ 소득금액증명원(근무경력 확인용)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10		■ 근무경력 사실확인서(근무경력 확인용) - 폐업에 따른 근무경력 입증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11	우대조건 확인용 (해당자만 제출)	■ 우대요건 경력(재직)증명서 1부 - 우대조건 경력이 있는 사람은 관련 경력 증명서류 제출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를 상세하게 기재할 것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12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13		■ 소득금액증명원 1부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13		■ 자격증 사본 1부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 표시(  )를 하여 주십시오.

2023. . .

성명: (서명)

**소방청장 귀하**



## 직무수행 계획서

응시번호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작성 요령<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한글(hwp) 양식으로 작성할 것</li><li>-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5매(총 6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li><li>- 글자체는 휴먼명조 / 크기는 13포인트 / 글자 색은 검정</li><li>- 줄 간격 160%로 작성할 것</li><li>- 보고서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li><li>-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li></ul></li> <li>▪ 시험공고에 명시된 채용예정 직무분야 업무와 연계하여 자유롭게 작성<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 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②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구체적 실천방안 순</li></ul></li> <li>▪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하면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li></ul> <p style="text-align: center;">※ 작성 안내 사항은 삭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p>			

2023. . .

작성자:

(서명)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명		응시부처	소방청
생년월일	. . . .	응시직급	일반직공무원(간호 7급)

본인은 소방청에서 시행하는 **일반직공무원(간호 7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소방청이 실시하는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5조 등에 따라 **채용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서명)

**소방청장 귀하**

## 근무경력 사실확인서(해산 또는 폐업)

이 사실확인서는 해산(폐업)에 따른 경력에 대한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이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 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 경력	사업체명	해산(폐업) 연도	직 위	재직기간	담당업무
				. . . ~ . . . (    년    월)	

**입증인(1) 주소:**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근무처(직위):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 \_\_\_\_\_

제출자와의 관계: \_\_\_\_\_ 연락전화번호: \_\_\_\_\_ - \_\_\_\_\_

**입증인(2) 주소:**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근무처(직위):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 \_\_\_\_\_

제출자와의 관계: \_\_\_\_\_ 연락전화번호: \_\_\_\_\_ - \_\_\_\_\_

붙임: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1부

**소방청장 귀하**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소방청장 귀하

####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